

의안번호	2215589
의 퇴 인	김태선 의원
회 답 일	2026. 4. 22.
추계번호	25B727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의2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3. 「 <u>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u> 」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 한 업무	의무규정
2	안 제3조(노동 위원회의 관 장)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함(제1항)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 및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	의무규정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3	안 제6조(노동 위원회의 구성 등)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함(제6항) 4. <u>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u>	의무규정
4	안 제8조(공익 위원의 자격기 준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 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2. <u>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u>	의무규정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 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2. <u>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u>	
5	안 제15조(회 의의 구성 등)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 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 를 둬.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8. 「 <u>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u> 」 제24조에 따른 <u>분쟁조 정위원회</u>	의무규정
		제1항제8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 분쟁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제10항 신설)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안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3	안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4	안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5	안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¹⁾의 의결을 전제로, 노무제공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내용임

- 개정안은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①노무제공계약의 체결에 관한 분쟁, ②노무제공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분쟁, ③노무제공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분쟁, ④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²⁾

1)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15591호)

2)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15591호)

안 제13조(분쟁조정 신청) ① 사업자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일하는 사람은 제24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 제24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³⁾의 규모와 분쟁 발생 건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래에 발생할 분쟁 조정 신청 건수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도 검토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개정안은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15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에 관한 분쟁

2.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노무제공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분쟁

4.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법」 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방법, 조정조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15591호)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